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6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위해,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조합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1. 처분 대상(조합)

연번	인가번호	조합명	조합 소재지	대표자
1	서울특별시 제2011-19호	참소망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7, 2층	강병용
2	서울특별시 제2012-8호	서현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680	이영미

2. 처분내역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3. 처분사유

- (참소망, 서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
- (서현)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의료법」 위반 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의2호)

4. 근거법령 :

- (참소망, 서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4호
- (서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5호

5. 처 분 일 :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6. 처분행정청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울시청 공정경제과
- 담당자 : 서윤성(전화 02-2133-5364)

7.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법원에 하여야 함.
- 이의신청은 처분 행정청에 문서 제출을 통해 하여야 함.

8.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행정소송법 제20조)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행정기본법 제36조)

9. 준수사항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를 게을리 할 경우 동법 제88조 제3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해산등기 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법령에 따라잔여재산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민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잔여재산 처분방법을 총회 의결을 통해 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처분행정청의 잔여재산 처분인가를 받은 후 재산 처분하여야 함.(다음 페이지 서식 첨부)

잔여재산 처분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조합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이 사 장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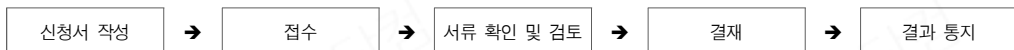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1. 4.>

청 산 종 결 신 고 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조합·연합회·전 국연합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 및 「민법」 제9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시장 귀하

신고인(청산인)	없 음	수수료 없 음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